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”를 “국·공립학교와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 의 구성)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 영위원회”라 한다)중 국·공립 의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</u> (이하 제62조까 지 “국·공립학교”라 한다)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규정(이하 이 절에서 “위 원회규정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 다.	제58조(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 의 구성) ①----- ----- ----- --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 ·공립학교에 두는 <u>운영위원회 위원의</u>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 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 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부	④ ----- 국 ·공립학교와 학교 내 모든 학 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<u>각종학교의 운영위원 회 위원</u> ----- ----- -----.

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 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	----- ----- ----.
제63조(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)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의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</u>(이하 이 조에서 “사립학교”라 한다)에 두는 운 영위원회(이하 “사립학교운영 위원회”라 한다)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·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63조(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) ①----- --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교정책과	
연락처	(044) 203 - 6203
	(044) 203 - 6492